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8)

◇ 제 · 개정 이유

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(수동)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,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가.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(안 제11조 제3항)

나. "호스릴분말소화설비"를 "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"로 함(안 제6조, 제11조제3항 및 제4항)